

○ 환경부고시제2002-112호 ○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1-21호, 2001. 2. 1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중개정

폐기물공정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항제4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소각시설 소각재의 경우

(1) 연소실 바닥을 통해 배출되는 바닥재와 폐열 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비산재의 채취에 적용한다.

(2) 공정상 소각재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비산방지 및 냉각)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물을 분사하기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수분을 줄여서 채취한다.

(3) 연속식 연소방식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 채취하는 경우 바닥재 저장조에서는 부설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채취하고, 비산재 저장조에서는 낙하구 밑에서 채취하며, 소각재가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재차량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내에 야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적터미에서 각 층별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분식 연소방식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운전횟수에 따라 매 운전시마다 2회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의 양은 1회에 500g 이상으로 한다.

㉗ 소각재 저장조에서 채취하는 경우

저장조에 쌓여있는 소각재를 평면상에서 5등분한 후 각 등분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소각재를 상하층으로 잘 섞은 다음 크레인으로 일정량을 저장조 밖으로 운반한다. 다만,

시료채취장소가 좁아 작업하기 힘든 경우에는 크레인으로 부터 직접 일정량을 채취하는 것으로 한다. 시료는 운반된 소각재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각 등분마다 500g이상을 채취한다.

㉘ 낙하구 밑에서 채취하는 경우

시료의 양이 1회에 500g이상이 되도록 채취하며, 전체시료의 수는 제6호 (가)에 따른다.

㉙ 야적 터미에서 채취하는 경우

야적터미를 2m 높이마다 각각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적절한 지점에서 500g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며, 전체시료의 수는 제6호(가)에 따른다.

㉚ 소각재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차량에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6호 (다)를 따른다.

(4)위 (3)의 각 경우별로 채취한 시료는 혼합하여 제2항 시료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 최종 시료로 한다.

제2장제1항제5호중 “1회에 100g이상을 채취한다.”를 “1회에 100g이상 채취한다. 다만, 소각재의 경우에는 1회에 500g이상을 채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16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해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 자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5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검사대행자지정내용변경지정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환경측정기기검사대행자지정분야

<정도검사>

1. 대기분야

가. 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다. 대기연속자동측정기

2. 수질분야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질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자동차 분야

가.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매연측정기

다.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원동기동력계 및 자대동력계용 배출사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마.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바.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사. 입자형태의 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검정>

1. 기체상 표준물질(표준가스)

2. 교정용 매연표준지

◎ 환경부고시제2002-109호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2003년 12월 31일까지 1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02-110호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2002년12월 31일까지 110원으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02-114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곤지암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2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1. 사업목적

광주시 곤지암지역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고도처리하여
팔당호 상수원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
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광주시장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도평리 17-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714㎡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 명칭 :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시설용량 : 20,000톤/일

- 처리방법(변경)

· 당초 : 산화구법

· 변경 : 산화구법+ 생물막여과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 예정배수구역 : 10,499Ha

- 예정처리구역 : 1,709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2~200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 없음

사. 기타 관계서류는 광주시 도시과(031-760-296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1

○ 환경측정기기

- 명칭 : 소음계

- 형식 : SdB02+

- 제작사(국적) : 01dB-Stell(프랑스)

○ 형식승인번호 : NESM-75

○ 형식승인일 : 2002년 7월 16일

○ 비고 : 신규

⊙ **금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2-29호** ⊙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규
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7월 23일
금강환경관리청장

1. 업소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대표자 : 곽영훈

3. 소재지 : 대전 유성구 가정동 30

4. 등록번호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1호

6. 등록일자 : 2002년 7월 10일

7. 전화번호 : (042)868-3641

⊙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2-67호** ⊙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 **환경부고시제2002-120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시행규칙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유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를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목적

김해시 주촌면과 장유면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고도처리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남 김해시 화목동 190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37,890㎡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시설용량 : 97,000톤/일

- 처리방법(변경)

- 당초 : 11,662ha
- 변경 : 16,560ha

마. 사업시행기간 : 1998년~2004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 없음

사. 기타 관계서류는 김해시 기반조성과(055-330-396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121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창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

마산/창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목적

마산시 및 창원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고도처리하여 방류수역인 진해만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마산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 3가 4-11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치 : 경상남도 마산시 덕동 714번지 일원
- 부지면적(변경)

- 당초 : 222,094㎡
- 변경 : 223,991㎡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칭 : 마산/ 창원 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500,00톤/일

- 처리방법(변경)

- 당초 : 표준활성슬러지법
- 변경 : NPR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

- 예정배수구역
- 당초 : 5,837.3ha

- 변경 : 6,271ha

- 예정처리구역

- 당초 : 2,731ha
- 변경 : 3,119.5ha

마. 사업시행기간 : 1996년~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 “붙임” 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마산시 하수도과 (055-240-23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122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 방법(환경부고시제2002-23호, '02. 2.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공정시험방법중개정

<제3장제3절제17항 및 제18항의 각각 내용은 연합회로 문 의>

◎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제2002-2호** ◎

안성제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변경지정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02년 7월 29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

구 분	대 상 지 역	공 동 처 리 구 역	
		면 적	비 고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안성제2산업단지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일원)	1,273,115.5㎡	
	미양제2산업단지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구수리, 부채리 일원)	(716,469㎡)	
	안성제3산업단지	(159,986.5㎡)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일원)	(396,700㎡)	

1. 공동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유역계획과 및 안성시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제2002-3호** ◎

안성제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02년 7월 29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인근 산업단지 오·폐수 유입·처리

나.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12,500㎡/일

○ 설치면적 : 17,526㎡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1년 12월 31일 ~ 1993년 12월 31일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8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3,989 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064, 765천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안성제2산업단지 부지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완료

※미양제2산업단지 및 안성제3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시설 설치비 면제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부담

※미양제2산업단지 및 안성제3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재투자적립금 차등 적용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안성시 지역경제과 (031-678-2355)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 환경부령 제123호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 6606호)됨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오염부하량의 할당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이하로 하도록 하고, 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장이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이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기준을 정함(제7조).

나. 국가가 상수원관리지역외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을 낙동강본류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낙동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등으로 정함(제11조).

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 내지 제21조).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절차를 정함(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그 조성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제32조).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6

조 및 제37조).

사. 2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의 재이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함(제40조 내지 제42조).

아.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비를 토지면적, 행위제한정도, 주민 1인당 지원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도록 그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제45조, 별표 10 및 별표 11).

○ 환경부령 제124호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지문원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지문원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

1. 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4호)됨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오염부하량의 할당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하고, 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장이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기준을 정함(제8조).

나. 국가가 상수원관리지역외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을 영산강·섬진강분류하천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영산강·섬진강분류하천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영산강·섬진강분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함(제11조).

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 내지 제21조).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하도록 하는 등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절차를 정함(제22조 및 제23조).

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바.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비를 토지면적, 행위제한정도, 주민 1인당 지원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도록 그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제37조, 별표 8 및 별표 9).

○ 환경부령 제125호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5호) 됨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오염부하량의 할당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하고, 비료는 농진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장이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기준을 정함(제6조).

나. 국가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외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금강분류의 정계로부터 2킬로미터 내지 3킬로미터 이내 지역, 금강분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내지 1.5킬로미터 이내 지역 등으로 정함(제9조).

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내지 제

19조).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절차를 정함(제20조 및 제21조).

바.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비를 토지면적, 행위제한정도, 주민 1인당 지원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도록 그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제35조, 별표 8및 별표9).

⊙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01호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개선을 통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2001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으로 개정 신설된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함.
나. 해양환경부담금 납부자의 일시적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
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에 착오가 있을 경우의 부담금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토록 정함.

3. 기타문의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보전과장, 전화:02-3148-6563, 전
송:02-3148-6565

◎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02호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개선을 통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2001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으로 개정 신설된 해양오염방지법 제 46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폐기물해양배출실적보고서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서식을 정함.

나. 부담금 납부고지서, 부담금분할납부신청 및 부담금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의견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 전화 : 02-3148-6563, 전송 : 02-3148-6565)

◎ 환경부령 제126호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2002년 7월 1일 이후)중 규모란의 승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나목4)(2002년 7월 1일 이후)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용1	엔진배기량 800 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 8인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5.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동차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승용1은 3)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및 승용1자동차의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시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공고제2002-99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 등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의 이행여부 인정기준이 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함.
- 나.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기보조금의 효율 및 보증금운영과 관련한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빈용기보조금의 운영실적 보고 등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를 규제함

다.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제출 및 구매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기타문의

(전화:2110-6955-7, FAX:504-9289)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2-17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9.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8월2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관찰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2-1-530란 다음에 2002-1-531 내지 2002-1-534란을, 별표2의 2002-2-11란 다음에 2002-2-1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유독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2-1-531	N-[3-(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 [N-[3-(Oxiranyl 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71604-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 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위해 가능성이 있음.	·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2002-1-532	N-[2-메틸-4-(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N-[2-Methyl-4-(oxiranylmethoxy)phenyl]-N-	· 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 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위해 가능성이 있음.	·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2-1-532	(oxiranyl methyl) oxiranemethan amine; 110656-6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보여줄 것.	
2002-1-533	N-알킬(C=8~22) 폴리트리메틸렌폴리아민, 카복시메틸 유도체, 나트륨염 [N-Alkyl(C=8~22) polytrimethylenepoly amines, carboxy methyl derivs., sodium salt : 97659-53-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하는 혼합 물질.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2002-1-534	1,3-디-2-프로페닐-2-(2-프로페닐옥시) 벤젠, 에폭시화 [1,3-Di-2-propenyl-2-(2-propenyloxy) benzene, epoxidized]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 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위해 가능성이 있음.	·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별표 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02-2-12	4,4'-카르보닐비스-1,2-벤젠디카복시산과 2-메틸-1H-이미다졸(1:2)의 화합물 [4,4'-Carbonylbis-1,2-benzenedicarboxylic acid compd. with 2-methyl-1H-imidazole(1:2); 172140-94-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2002-18호 ○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별표의 2002-3-2139란 다음에 2002-3-2140 내지 2002-3-216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년 8월2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3-2140	1-(2-Hydroxyethyl)pyrrolidine-2-one [CAS No. 3445-11-2]
2002-3-2141	Choline hydroxide [CAS No. 123-41-1]
2002-3-2142	Dichloro silane polymer with ammonia, 1,1,1-trimethyl-N-(trimethyl silyl)silanamine-terminated [CAS No. 182077-25-4]
2002-3-2143	Phosphorous trichloride reaction products with 4,4'-thiobis[2-(1,1-dimethylethyl)-5-

	methylphenol] [CAS No. 310903-37-8]
2002-3-2144	4-Amino-3-methylphenol [CAS No. 2835-99-6]
2002-3-2145	[총칭명] Substituted carbopolycycle and alkane chlorosulfonyl ester mixture of hydroxy alkyl carbopolycycle
2002-3-2146	Aluminium borate oxide [CAS No. 12005-61-7]
2002-3-2147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2-ethanediol, α -hydro- ω -hydroxypoly (oxy-1,4-butanediyl) and α -hydro- ω -hydroxypoly (oxy-1,2-ethanediyl) [CAS No. 39475-86-0]
2002-3-2148	1,2,3,4,4 α ,5,8,8 α -Octahydro-1,4:5,8-dimethanonaphthalene polymer with ethene [CAS No. 26007-55-6]
2002-3-2149	[총칭명] Heteropolycyclic hydroxyamino carbopolycyclic ether
2002-3-2150	2-[4-(4-Methoxyphenyl)-6-phenyl-1,3,5-triazin-2-yl]phenol [CAS No. 154825-62-4]
2002-3-2151	Do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4,4'-methylenebis(cyclohexanamine) [CAS No. 25038-97-5]
2002-3-2152	2,2-Bis(4,4-di-tert-butyl-dioxycyclohexyl)propane [CAS No. 1705-60-8]
2002-3-2153	[총칭명] Nitriloalkylene (C=1-5) phosphonic acid N-oxide salt
2002-3-2154	4-Methyl-N-[(4-methylphenyl)sulfonyl]benzenesulfonamide, potassium salt [CAS No. 97888-41-0]
2002-3-2155	4-Methyl-N-[(4-methylphenyl)sulfonyl]benzenesulfonamide [CAS No. 3695-00-9]
2002-3-2156	[총칭명] Carbopolycycle polymer with alkoxyalkylbenzene
2002-3-2157	[총칭명] Ethylated cyclol monosubstituted benzyl carboxylate
2002-3-2158	Octafluorotetrahydrofuran [CAS No. 773-14-8]
2002-3-2159	N,N'-Bis(2,2,6,6-tetramethyl-4-piperidiny)-1,6-hexanediamine polymer with 2,4,6-trichloro-1,3,5-triazine reaction products with 3-bromo-1-propene, N-butyl-1-butanamine and N-butyl-2,2,6,6-tetramethyl-4-piperidinamine, oxidized, hydrogenated [CAS No. 부여되지 않음]
2002-3-2160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3,5-tris(2-hydroxy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CAS No. 26337-62-2]
2002-3-2161	Hexanedinitrile, hydrogenated, high-boiling fraction [CAS No. 68411-90-5]
2002-3-2162	4,4'-[(3,3'-Dimethoxy[1,1'-biphenyl]-4,4'-diyl)bis(azo)]bis[2,4-dihydro-5-methyl-2-phenyl-3H-pyrazol-3-one] [CAS No. 6505-29-9]
2002-3-2163	Polyphenyls, quater- and higher, partially hydrogenated [CAS No. 68956-74-1]
2002-3-2164	Ethyl(phenylethyl)benzene, mono- <i>ortho</i> -ethyl derivative [CAS No. 68398-19-6]
2002-3-2165	Ethylbenzene homopolymer [CAS No. 27536-89-6]
2002-3-2166	Benzene, ethylenated, by-products from [CAS No. 68608-82-2]
2002-3-2167	Hexasodium 2,2-[vinylenebis[3-sulfonato-4,1-phenylene]imino[6-bis(2-hydroxypropyl)amino]-1,3,5-triazine-4,2-diyl]imino]bis(benzene-1,4-disulfonate) [CAS No. 371756-75-1]
2002-3-2168	[총칭명] p-Hydroxycarbom onocycle, substituted carbom onocycle copolymer

○ 환경부령 제127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8 월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2002. 3. 18, 대통령령 제 17544호)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2. 주요골자

-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는 매립시설에 적용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 등의 폐기물은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제7조·제8조 신설).
-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제4항제1호).
- 다.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처리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지정폐기물의 월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제16조제5항 신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매립시설에 매립가스의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21조제3항제6호).

마.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의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간은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등을 강화함(제19조의2 및 별표 4 제7호다목).

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교육횟수를 단축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때 및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교육을 받도록 함(제34조제1항).

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형광등,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 폐어망울 재활용대상 폐기물에 추가함(별표 11의2 제4호의 12, 동표 제4호의13 신설).

○ 대통령령 제17703호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6호중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를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 제49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1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9. 별표 9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승인

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수리

다.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등

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사.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아. 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승인

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의 제거·억제 조치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차.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제49조제1항중 “별표 9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를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관할 사업장(제48조관련)”을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제34조제4항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및 일부 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모든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도·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 8월 8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김명자

◎ 대통령령 제17704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제6호중 “법제43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43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등록·변경등록·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를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를 삭제한다.

7. 법 제43조의3의 구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51조제2항중 “시·도지사(별표 12의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12를 삭제한다.

부칙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및 일부 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모든 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 8월 8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김명자

○대통령령 제1770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별표 4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를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및 일부 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유독물 영업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 등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 8월 8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

○대통령령 제17701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

1.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 14, 법률 제6600호)되어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가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지정 기준 등을 정하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의 범위, 인정심사원의 자격, 인정기준 등을 그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17조·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나.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자금지원 등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경영 체제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가점부여 등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